

제322회 정례회

2013.7.17. (수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산업경제위원회

「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 
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3. 7. 17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2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25일
- 라. 상정일자 : 2013년 7월 4일

(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우중)

### 가. 제안이유

-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적극 실현하고 태양광 산업 선도 道로서  
이미지 제고를 위해

- 도 산하기관(직속기관·사업소 등)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대상시설 : 충북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(자치연수원) 외 6개소  
- 사용면적 : 2,974m<sup>2</sup>
- 사용목적 : 건물 옥상에 태양광 민자발전시설 설치
- 사용기간 : 설치일로부터 15년간
- 임대료 : 년 25,000원(kw 당)
- 허가조건 : 10년간 유상으로 임대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기간 연장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태양광민자발전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’은 ‘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’ 건설을 위해 도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옥상 및 부지 등에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발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시설물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전기 생산량과 도의 임대수입 그리고 민간업체의 수익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

- 도 산하기관(직속기관·사업소 등) -

##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(안)

### □ 사업개요

○ 영구시설물 축조 현황

기 관 명		소 재 지	운 산 면적 (m <sup>2</sup> )	설 치 면적 (m <sup>2</sup> )	설 치 장소	설 비 용량 (KW)
계			6,084	2,974		502.39
자치연수원	도민교육관	청원 가덕 한계 산27-3	885	600	건물옥상	92.34
도로관리사업소 (옥천지소)	본관동	옥천 청성면 도장리 496	640	430	“	79.5
축신위생연구소	본관동	청원 내수읍 구성리 420	610	360	“	63.6
	방역동		453	157	“	31.8
내수면연구소	본관동	충주 용탄동 118-1	357	197	“	32.4
	수질분석실		510	270	“	34.56
	보일러실		83	58	“	8.64
	민물고기 전시관		280	90	“	16.2
남부출장소	내수면연구과	옥천 청산면 산매리 667-2	346	130	“	23.85
충북화사 (청암재)	본관동	청주 상당 지북동 355-6	640	171	“	30.0
	별관동		550	57	“	10.0
충북체육회관	본관동	청주 상당 방서동 38-7	730	454	“	79.5

○ 사업방식 : 민간투자방식(BOT)

- 민자사업자 : 투자(시공)+운영관리 및 전력수익(계약기간) ⇒ 기부채납
- 도 직속기관·사업소 : 시설제공 + 임대수익(계약기간) + 기부재산 운영관리 및 전력수익

- 총 임대료/임대료(kw당 2만5천원)
  - 188백만원/12.5백만원(년간)
- 민자 발전사업자(SPC) 현황 : KS솔라 대표 김기호
  -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89

## □ 관련법 검토사항

-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
 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6조(국유 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    - ※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9조

## □ 담당부서 검토의견

- 공공건물 옥상 및 부지 등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,
- 도정목표 달성 및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통한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□ 의결 요구사항

-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(안) 동의

## □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

- 민자발전사업 대상지 최종 확정 : 2013. 6월
-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도 의회 동의 : 2013. 7월
- 임대(사용허가) 신청 : 2013. 7월
-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: 2013. 7월
- 전기사업(발전) 허가 : 2013. 7월
- 공사착공 : 2013. 7월
- 준공 및 상업운전 : 2013. 10월

- 붙임 1.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내역 1부.  
2. 관련법령 발취 1부. 끝.

(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내역)

〈재산의 표시〉

NO. 1	자치연수원(도민교육관)
현장주소	충북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 27-3
설치용량	92.34KW (설치면적 600㎡)
배 치 사 진	 <p>270w 모듈 342 장 18직렬 19병렬 342장 X 270 W = 92.34 kW</p> <p>         ■ Location : 자치연수원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         ■ 주요 자재 : 태양전지판 DP270 - 342 SHEETS          인버터 99kW - 1EA          전기 공사 - 1식          구조물공사 - 1식          ■ 설치 용량 : 92.34 kWp(모듈정격용량)          ■ 구 성 : 18직렬 19병렬       </p>

NO. 2	<b>도로관리사업소(옥천지소)</b>
현장주소	충북 옥천군 청성면 도장리 496
설치용량	79.5KW (설치면적 430㎡)
배 치 사 진	<p> <b>Location :</b> 옥천 도로관리사업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 <b>주요 자재 :</b> 태양전지판 265W(DG-BM265CS) - 300 SHEETS          인버터 16.5kW - 5EA          DC접속반 15ch - 1EA          전기공사 - 1식          구조물 공사 - 1식  <b>설치 용량 :</b> 79.5 kWp(모듈정격총량)  <b>구 성 :</b> 20직렬 15병렬       </p> <p>         1차측 9중 직렬 2차측 2중 직렬          265W 모듈 900 장          20직렬 15병렬          900 장 X 265 W = 79.5 kW       </p>

NO. 3	<b>축산위생연구소</b>
현장주소	충북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
설치용량	95.4KW (설치면적 517㎡)
배 치 사 진	<p> <b>Location :</b> 축산위생연구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 <b>주요 자재 :</b> 태양전지판 265CS - 360 SHEETS          인버터 90kW - 1EA          접속반 18ch - 1EA          전기공사 - 1식          구조물 공사 - 1식  <b>설치 용량 :</b> 95.4 kWp(모듈정격총량)  <b>구 성 :</b> 20직렬 18병렬       </p> <p>         265CS 모듈 120 장 20직렬 6병렬          120 장 X 265 W = 31.8 kW 방역동.       </p> <p>         265CS 모듈 240 장          20직렬 12병렬          240 장 X 250 W = 63.6 kW 본관동.       </p>

NO. 4	<b>내수면연구소</b>
현장주소	충북 충주시 충주 호수로 423
설치용량	91.8KW (설치면적 615㎡)
배치사진	<p> <b>Location :</b> 내수면연구소 외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 <b>주요 자재 :</b> 태양전지판 270W(SS-DP270) - 340 SHEETS          인버터 20kW - 2EA, 17kW - 3EA, 13kW - 1EA          전기 공사 - 1식          구조물 공사 - 1식  <b>설치 용량 :</b> 91.8 kWp(모듈정격용량)       </p>

NO. 5	<b>남부출장소(내수면연구과)</b>
현장주소	충북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667-2
설치용량	23.85KW (설치면적 130㎡)
배치사진	<p> <b>Location :</b> 남부출장소 옥천지사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 <b>주요 자재 :</b> 태양전지판 265W(SS-BM265C) - 90 SHEETS          인버터 16.5kW - 1EA, 12.4kW - 1EA          접속반 2ch - 1EA, 3ch - 1EA          전기 공사 - 1식          구조물 공사 - 1식  <b>설치 용량 :</b> 23.85 kWp(모듈정격용량)       </p>

NO. 6	<b>충북학사(청람재)</b>
현장주소	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-6
설치용량	40KW (설치면적 228㎡)
배치사진	

NO. 7	<b>충청북도 체육회관</b>
현장주소	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-7
설치용량	79.5KW (설치면적 454㎡)
배치사진	

## 【관계법령 발췌】

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[시행 2012.1.1] [법률 제10445호, 2011.3.9, 타법개정]

**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"임대"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4.12.]

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[시행 2011.10.13] [법률 제10580호, 2011.4.12, 타법개정]

**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**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08.12.26]

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12.4.15] [대통령령 제23718호, 2012.4.10, 타법개정]

**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**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2.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·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
3.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4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5. 제29조제1항제13호·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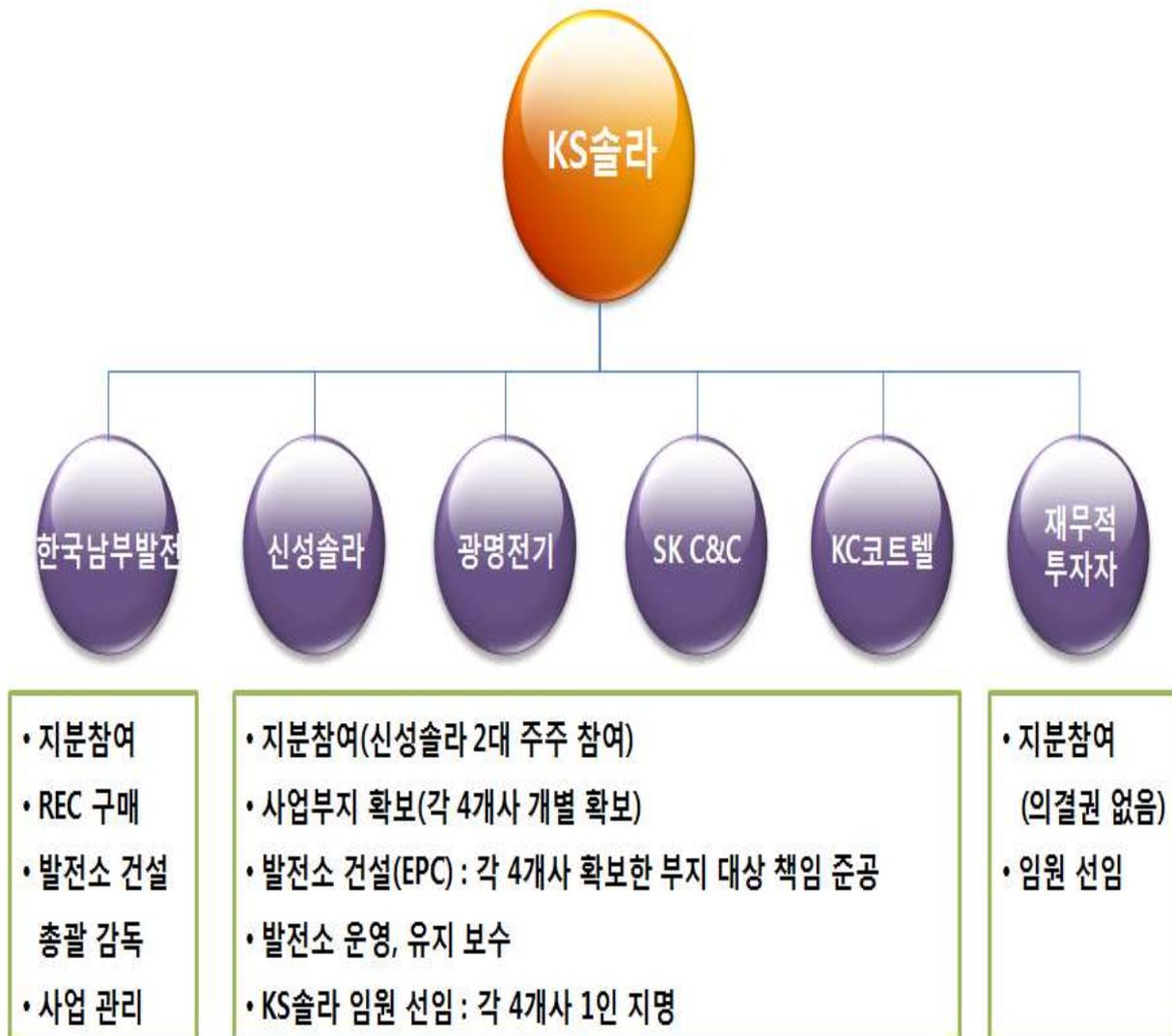
- 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6.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
  7. 매각·양여·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
  8.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
  9.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(空中)·지상·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
  10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  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[전문개정 2009.4.24]

【참고자료】

#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물(지붕) 임대 제안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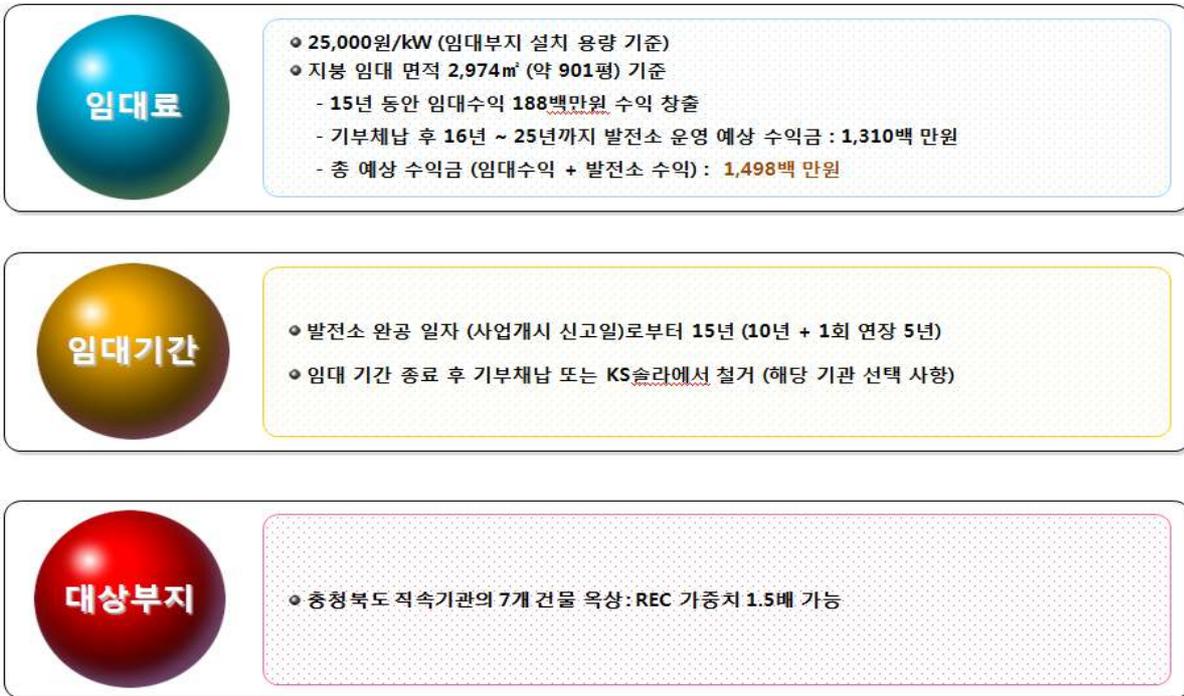
## □ SPC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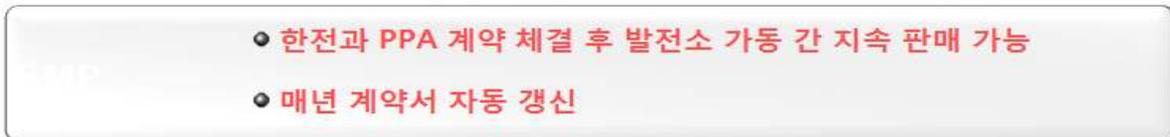
## ※ KS솔라

- 30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(SPC)
- 설립일자 : 2013년 3월 12일
- 자본금 : 83억 8천만원(증자 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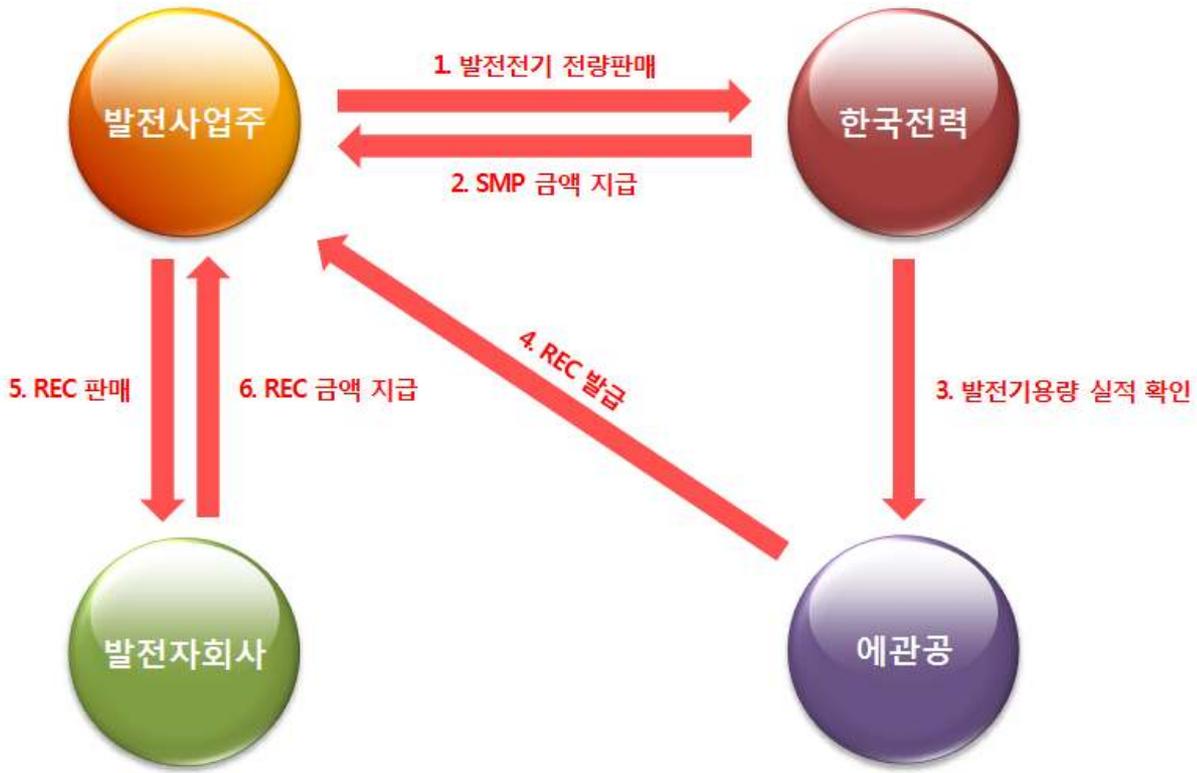
## □ 임대제안



## □ RPS사업 매전방법



## □ RPS사업 매전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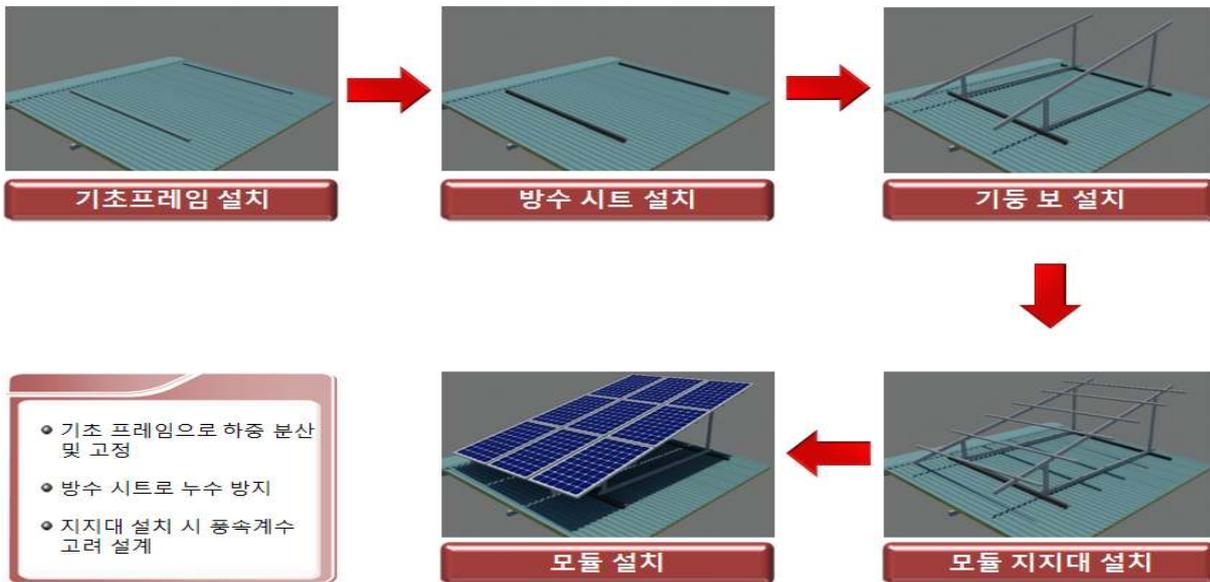
## □ 설치타입



### 지붕 경사 고정형

- 설치면적**
  - 약 4,000~6,000평 (1MW)
- 안정성**
  - 추적식 대비 하중의 영향이 적음
  - 설계 시 구조계산을 통한 하중 및 풍속에 대한 안정성 확보
  - 슬레이트 지붕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태양광발전소가 무게로 고정해 주어 피해가 적음
- 유지관리**
  -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수 대책 사전 강구 및 유지관리 서비스 시행
  - 매 분기별 1회 설치현장 방문하여 태양광 발전소 유지관리 시행

## □ 설치상세도



## □ 설치 및 허가

